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922144- 144-144	전화번호	원규정권 3조/합 결사합
처리기간		보건사 외국장	
시행일자	76.3.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3.16</div>	
보존년한			
보조기관	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계장	기획관리관
	위생계장		예산담당관 (사무담당관 (사무인사)) 의계과장 (공공) 시민과장 예산/계장 (공공) 회계심사계장
기안책임자	김영준	76.3. (윤병어)	조 예산/계장 (공공) 회계심사계장
경유 수신 참조	과안 참조	발	봉 검열
제목	1976년 이용사 및 비용사 자격시험 실시		주무과발송
(제1안) 내부 결재			
1. 76년도 이용사 및 비용사 자격시험을 이용사 및 비용사법 제3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아택과 같이 실시코저 합니다.			
가. 실시요령			
별첨 시험실시계획서와 소요 예산 집행계획서에 의거 실시코저 함.			
첨부 1) 시험실시계획서 1부. 2) 소요 예산 집행계획서 1부. 3) 공고안 1부. 끝.			
(제2안)			
수신 보건사회무장관			
참조 환경위생과장			
제목 등 건			
1. 당시 76년도 이용사 및 비용사 자격시험을 별첨 공고문과 같이			

0301-1-8A (장)
1969. 11. 10 승인

150mm X 283mm 인체용지 (2급) 65g/㎡
시립소년기술원(92-0436)

심사코지 합니다.

첨부 : 공고문 1부.

(제3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동 건

1. 당시 76년도 이용사 및 미용사 자격시험을 붙임 공고문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내 전업소외 해당자에게 널리 주지시켜 다수 응시토록 계몽
 함것.

첨부 : 공고문 1부.

수신 : 서청 2-12, 서사 6-16

(제4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동 건

1. 당시 76년도 이용사 및 미용사 자격시험을 붙임 공고문과 같이
 실시하오니 귀회 산하 회원들에게 널리 주지시켜 다수 응시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2. 귀회 회원중 이 미용사 자격시험 제8조에 정한 자격이 있는자로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위원을 아택양식에 의거 이력서(사전첨부) 2통을 첨부
 추천하여 3.30.일까지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학과 및 실기시험위원 각 1명)

종별	성명(한문)	학력	직위	년령	입소명	주소	전화(자택)

첨부 : 공고문 13부.

수신처 : 한국 이용사회 중앙회장
 대한미용사회 "

(제5안)

수신 온좌충보십장

제목 이음용사 자취시험 실시에 따른 신문공고 게재 보도의뢰

1. 당시 76년도 이.미용사 자취시험을 범침 공고문과 같이 실시하오
니 신문방송을 통한 보도와 신문공고 게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료 144,000원(자사) = 144,000원

첨부: 공고문 10부. 끝.

(계6안)

수신 정화고등기술학교장

제목 학교시설 사용협조 (실기시험장)

1. 당시 76년도 이.미용사 자취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코저하오니
귀교의 실습실및 실습기구를 사용토록 건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일시 : 76.5.2(월) - 이용
76.5.8(화) - 이용

2. 학교시설 사용에 따른 임대료는 당시 소정금액을 학교장 청구에
의하여 지불하겠습니다. 끝.

(계7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등 건

1. 당시 76년도 이.미용사 자취시험을 범침과 같이 실시하오니
귀교 교장 및 교사중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위원을 아랫양식에 의거 이력서
(사전첨부) 2통 첨부 각 1명씩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0.한)

종 별	성명(한문)	학력	직위	주소	전화(자택)

첨부: 공고문 1부. 끝.

수신처: 예림, 정화, 무궁화, 서울, 중앙, 예대

(계8안)

수신 법무부장관
참조 계획과, 소년과
제목 등 건
1. 당시 76년도 이.미용사 자격시험을 범침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 당자 전원 응시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고문 10부. 끝.
(제9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등 건
1. 76년도 당시 이.미용사 자격시험을 범침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자 전원을 시험에 응시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고문 7부. 끝.
수신처 : 시립부녀사업관, 시립여자계속원, 명화, 신일, 현대, 진선미, 영등포, 보국, 새서울, 경기미용학원.

이용사 및 미용사 자격시험 실시 계획서

1. 시험종별

후. 미용사자격시험

나. 미용사 자격시험

2. 시험일시

가. 이용자 및 미용사 자격시험

(1) 학과시험 : 1976.4.18(일) 09:00-13:00 ✓

(2) 실기시험 : 이용자 ... 76.5.1. 09:00-17:00

미용사 ... 76.5.8. 09:00-17:00 ✓

3. 시험장소

미용사 자격시험은 해당기술분야를 다루는 시험인만큼 이에 소요되는
적당 시설이 설비실적 약 2,000여명의 응시자를 수용할수 있는 시내 교통이
편리한 중앙거리대에 위치하고 있는 다음의 학교 시설을 사용모자함.

가. 학과시험장 (미.미용)

추후 결정

나. 실기시험장

전라고등기술학교 (중구 남산동1가6-3호)

4. 합격자 발표일시 및 장소

가. 학과시험발표 .. 76.4.26 . 15:00 시청 후정

나. 최종합격자발표 .. 76.5.15. 10:00 시청후정 게시판

5. 시험과목

가. 이용자 및 미용사 학과시험

(1) 학생연구

(2) 소독법

(3) 공중위생

(4) 이용 또는 미용 이론

나. 심거시험과목

- (1) 이용 또는 미용의 기초적 기술 (이용은 조밥·면도, 미용은 아이롱·선풐 등)
- (2) 소독의 취급
- (3) 이용 또는 미용합때의 위생상의 조치

6. 용서작곡

이용사 및 미용사별 시험구획 개정으로 제안구정이 책정됨. (제안구정 있음)
~~이용사 및 미용사별 시험구획 개정으로 제안구정이 책정됨. (제안구정 있음)~~

7. 용서원서 구비서류

- 가. 용서원서 1통 (당 서 소정서식)
- 나. 건강진단서 1통 (보건소장발행)
- 다. 사진 4매 (앞면·정면·상반신·최근 3월내 촬영 3x4)
- 라. 수수료 2000원 (사용사 수납증거)

8. 용서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 가. 접수 기간 : 26.3.29 - 4.10 (2주 가)
- 나. 접수 장소 : 보건사회국 보건행정과

9. 기타

제출된 용서원서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이용사 용서자는 심거시험 심습상
 모델관계가 있어 심거용사 15일전부터 조바치발것을 용서원서 접수시에
 주게시한다.

10. 시험위원회 구성 및 위촉

이용사 및 미용사 자격시험 규정에 의거 당시 이용사 및 미용사 자격시험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시험위원회 구성

위원장 : (보건사회국장) : 위원장은 시험기간중 위원과 관계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부위원장 : 보건행정과장 : 위원장 부재시 그 몫을 대행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관사 : (외생계장) .. 시험실시에 따른 준비와 시험장을 관리하여
관계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서기 : (외생계담당직원) .. 서기는 시험전반에 대한 사무를 담당한다.

0. 학과시험위원 - 선정기준

- (1) 대학교수였던 이.비용 고등 기술학교 교직에있는 유력한 인사
- (2) 위원수 : 이용사 및 비용사 시험과목당 2명 (별도 위촉)

● 심기시험위원 - 선정기준

- (1) 현재 이.비용 고등 기술학교 장직에있는 유력한 인사
- (2) 이.비용 사 중앙회에서 추천하는 이.비용의 유력한 인사
위원수
이용사, 비용사 각 2명 (별도 위촉)
(심기출제 및 채점에 책임을 전다)

11. 시험문제 출제방법

가. 학과시험

- 1) 학과시험위원은 담당과목에 대한 시험문제 30문제(과목당)를 출제하여
위원장은 60문제를 20문제를 과목별로 30분 이내에 해당할수 있는 정도로
혼합 선택한다.
- 2) 출제범위는 전 이.비용 고등 기술학교의 수업과정의 내용정도를 출제한다.
- 3) 출제한 시험문제는 당해 시험위원이 밀봉남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나. 심기시험

심기시험위원은 이.비용의 기초적 기술과 소독 및 위생상 조치등으로 구분
과분야에 대한 기술 습득을 측정한다.

12. 시험장관리및 감독

가. 보건사회국 산하 직원을 차출 시험에 관한 사무를 시험장 감독원으로 배치한다.

(차출인원은 응시수액의 1/100 이하)

나. 감시원은 배치된 시험장 이외의 다른시험장 출입을 금하며 장내 시험감독과
시험담안거, 시험문제정도를 수집하고 이를 책임관에게 인도하고 시험장내

부정행위가 있을 때는 약탈 무효로 하고 관련자간 입증본책한다.

다. 위원회의 서기는 감사관의 배치 및 담당자 수장의 책임을 진다.

13. 시험의 채점방법

가. 학과시험은 과목당 20분 내에 배점을 75점으로 하고, 과목당 100점만점으로 하여 맞는 답만 계산하여 틀린 답의 감점없이 전자계산기(블루마크)에 의하여 채점한다.

나. 심격시험은 이머용의 기초적 기술과 소독 및 위생상조치등으로 구분 구분야의 기술습득 상태를 구심격시험위원이 출전 결과를 점수로 채점한다.

14. 시험합격기준

가. 학과시험

1)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4과목 400점만점으로 하고 총득점 240점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하고, 240점미만인 때는 불합격으로 한다.

2) 단 총득점이 240이상이라도 1과목이 40점미만일 때는 불합격으로 한다.

나. 심격시험


1) 구심격시험위원은 이머용 또는 이머용의 기초적 기술과 소독 및 위생상 조치등으로 구분 구분야에 대하여 각각 채점한 점수를 합하여 평균 60점이상은 합격으로 하고 60점미만인 때는 불합격으로 한다.

2) 심격시험 합격자는 시험위원장의 검제를 얻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15. 합격증 교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는 소정양식에 의한 합격증을 ~~76.5.30~~^{76.5.31}까지 당시 보건행정과에서 교부한다.

공 고 안

공고일	1976.3.17	66호
장소		

서울특별시공고 제 66 호

이용사 및 미용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안)
 당식 76년도 이용사 및 미용사 자격시험을 이용사 및 미용사법시행규칙 제16조
 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976. 3. 20.

서울특별시광

1. 시험일자 및 장소

가. 외국시험일시 : 76.4.18. 09:00-13:00

장소 :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청~~

나. 실기시험일시 : 이용사 .. 76.5.8. 오전 10시

미용사 .. 76.5.8. 오후 2시

장소 : 정취미술기술학교 (중구 동성동 178-3)

2. 응시자격

가. 공고일현재 만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여

3. 시험과목

가. 외국시험 (이용, 미용 공통)

- (1) 위생법규
- (2) 소독법
- (3) 금공위생학
- (4) 이용 또는 미용역론

나. 실기시험과목

- (1) 이용, 미용의 기초적 기술
- (2) 소독의 취급
- (3) 이용 또는 미용압박의 위생상의 조치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과 장소

가.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76.3.29 - 76.4.10. (보통근로시간내)

나. 접수장소 : 보건사회국 보건행정과

5.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 가. 용서원서 1통 (당시 소경향식)
- 나. 건강진단서 1통 (보건소장 발행)
- 다. 사진 4매 (앞모. 정면. 상반신. 최근 3월내 촬영 3×4)
- 라. 수수료 2,000원 (서울특별시 수입용지)

6. 합격자 발표

- 가. 합격시험 : 76.4.26. 15:00 시험후점 게시관
- 나. 최종합격자 : 76.5.15. 18:00 "

7. 기타 주의사항

- 가. 합격시험에 필요한 필기 도구 (검정색. 청남색용펜 또는 만년필) 및 두면용복종
을 시험 시험장인 08:30까지 시험장 지정위치에 전신하여 시험장출입의 지시
에 따라야 한다.
- 나. 심검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심검시험에 소요되는 이용비용거구를 적당하여
야 한다.
- 다. 시험사용석자는 심검시험일 15일전부터 도착시와 심검시험을 분하여한다.
- 라. 적용사 용석자는 세발후 심검에도 심검시험에 참가하여 않는다.
- 리. 기타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보건행정과 (72-9441)나 구구청 이상자에 문의
하시기 바람. 끝.

소요 예산 집행 계획서

1. 예산내역서

(관)보건비 (항)보건항상 (세항)보건회생관리 (4월영) 이기등여 재확산
 단위

총계 805,000 원

가. 계약수당	206,000원
과과출제위원수당	5,000원×과과×2인=30,000원
심겨출제	5,000원×과과×2인=30,000원
심겨시연	2,000원×2인×2과×2인=16,000원
합계수당	1,000원×120인×과과=120,000원
나. 품방비	60,000원
사업종사원 급식	60,000원
다. 출장수용비	209,000원
과과사업종사원	100원×1,300부×과과=130,000원
출장사업종사원	10원×2,000명×과과=20,000원
출거원차	5원×2,000명×과과=10,000원
방안차	5원×2,000명×과과=10,000원
장격용	5원×1,000명×과과=10,000원
출거용거	5원×500명=2,500원
심겨석정로	5원×500명=2,500원
연수역량	5원×1,000명=5,000원
장격용역량	5원×1,000명=5,000원
사무용품	5,000원
라. 운송비	10,000원
심겨사업종사원	5,000원×2차=10,000원
마. 수수료 신문광고료	144,000원
72,000원×2차=144,000원	

바. 임차료	185,000원
시험을 위한 편집실	2,500원×2일×3일×1화= 15,000원
필거시험장	3,000원×25실×1화= 75,000원
실거시험장	3,000원×25실×1화= 75,000원
실거시험기구	1,000원×20종×1화= 20,000원

사. 집행방법

보건행정과 지방행정사무관 김영준 으로 하여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의거 임시전도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집행함.